이천시 청원경찰 복무규정

소관부서 : 자치행정과

제정 2018·11·28 훈령 제273호 일부개정 2021·11·15 훈령 제301호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제7조에 따라 이천시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청원경찰"이란 「청원경찰법」에 따라 이천시가 관리하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의 경비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.
 - 2. "관리부서"란 청원경찰의 정·현원, 채용 및 배치, 징계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.
 - 3. "소속부서"란 청원경찰이 배치된 부서로 직무를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이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규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**제4조(정원관리 등)** ① 청원경찰의 소속부서별 정원은 관리부서의 장이 별도로 관리한다.
 - ② 시장은 직무의 신설 또는 폐지, 행정조직의 변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청원 경찰의 정원을 증원 또는 감축할 수 있다.
 - ③ 관리부서에서 정원을 조정할 경우에는 채용목적, 책정인원, 업무량,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- 제5조(채용) 청원경찰을 채용할 경우 채용자격·절차·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청원경찰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에 따라 관리부서에서 관장한다.
- 제6조(배치) 청원경찰은 관리부서에서 중요시설 유무, 정·현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하되 고충전보, 의무(희망)전보 등의 방법을 통해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제7조(성실근무) 청원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

이천시 청원경찰 복무규정

하여야 한다.

- 제8조(근무기강확립) 청원경찰은 법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제9조(신분증) ① 관리부서에서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한다.
 - ② 신분증 양식은 공무원 신분증 양식을 따른다.
 - ③ 청원경찰은 근무 중 신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한다.
- 제10조(비밀엄수) 청원경찰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.
- 제11조(근무시간) ① 청원경찰의 1주간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.
 - ②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. 다만, 소속부서의 장은 직무 의 성질,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·야간 교대근무 등 근무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제12조(지휘·감독) ① 청원경찰은 평일 근무시간 중에는 소속부서장,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 - ② 청원경찰은 근무 중 긴급하고 중요한 상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휘·감 독자에게 보고하고,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제13조(당직 및 비상근무) ① 청원경찰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부서장의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② 청원경찰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 청사경비, 화재, 그 외의 사고에도 대비하여야 하며,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-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「이천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」을 준용한다.
- 제14조(출장) ① 소속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.
 - ② 출장여비에 관한 사항은 「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」에 따른다.
- **제15조(휴가)**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「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를 준용한다. 〈개정 2021·11·15〉

- ② 정년퇴직 예정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를 위해 퇴직일 전 30일의 기간 안에서 유급 퇴직준비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. 〈신설 2021・11・15〉
- 제16조(보수 및 수당 등) 청원경찰의 보수 및 수당 등 경비는 법과 매년 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에 따른다.
- 제17조(준용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, 「근로기준법」, 「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21·11·15 훈령 제301호〉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